접수번호		카드번호	- - -	□ 신규 □ 보유

2025년도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신청서

신청인	성 명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
	전화번호 (휴대폰)	010 - -	주 소 (외국인체류지)	수원시

택 1 경 영 주 □ 공동경영주 □ 경영주 외 (가족원) □ 경영주 외 (고용종사자) □	경영주 성명			생년월일	
	경영체 등록사항		농업(축산) □	어업 □	임업 □
	농지소재지		수원시 내 □ / 경기도 내 □		
	택 1	일반농어민	□ /청년·귀농·환경·동물복지·명품수산물 농어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		
		청년농어민	40세 미만 □ (1985.1.1. 이후 출생자)	사회적가치 창출활동 증빙자료 제출(연 1회 이상)	
			40세 이상 50세 미만 □ (1975.1.1. ~ 1984.12.31. 출생자) (2015.1.1. 이후 농어업경영체 등록)	농어업교육이수 □ 자원봉사 □	
		귀농어민	귀농·귀어 5년이내 □ (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로 전입 후 농어업경영체 등록)	마을공동체활동 □ 기 타 □	
		환경농어민	친환경인증 농어민 □ 인증번호( )		
		동물복지	동물복지축산농장 □ 인증번호( ) 가 축 행 복 농 장 □ 인증번호( )		
		명품수산물	명 품 수 산 물 □ 인증번호( )		
	기타사항 (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체크)		군복무 □, 학생 □, (요양·치료)병원입원 등 □, 해당없음 □		

위와 같이 경기도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인/서명)

수원시장 귀하

* **(필요시 요구서류)** 농업(임업.어업)경영체 등록확인서, 주민등록표(등초본), 출입국사실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국내거소사실증명서, 소득금액증명, 친환경인증,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, 가축행복농장인증, 명품수산물인증, 사회적가치 창출(농어업교육이수, 자원봉사, 마을공동체활동, 기타 등) 등 증빙자료

* **(신청대상자) 아래요건에 모두 적합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**

- **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어업인**
- **거주기간 :** 수원시에서 연속 1년(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) 이상 거주한 자.(귀농어민은 적용하지 않음)
- **영농영어기간 :** 수원시에서 연속 1년(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) 이상 농수산물(농작물 재배업, 축산업, 임업, 어업)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한 자.(귀농어민은 적용하지 않음)
- **소득기준 :** 농외소득(농어업외소득) 3,700만원 미만(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)인 자.

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및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등

「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」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자 선정·심의, 지급 업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및 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, 신청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본인은 「전자정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(본인정보)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본인정보 제공시스템에 요구하고자 합니다.

☐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사항

1. 【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】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 관리
2. 【수집·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】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지역화폐 카드번호 등) 및 지급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각 항목 등
3. 【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】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(5년)

☐ 동의 ☐ 동의안함 (해당 ☐에 ✔ 표시)

☐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
❍ 동의해 주신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, 지역화폐 대행사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.

☐ 동의 ☐ 동의안함 (해당 ☐에 ✔ 표시)

☐ 본인 행정정보 제3자(경기도 등) 제공 요구에 관한 사항

❍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.

1. 【제공목적】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2. 【보유기간】 5년
3. 【제3자(이용기관)】 경기도, 지역화폐사, 경기도농수산진흥원, 정책연구용역자
4. 【본인 정보】 주민등록등·초본(행정안전부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이력 등), 농업·어업·임업 경영체등록확인서(농림축산식품부,해양수산부,산림청: 농어업인 등록정보 등), 출입국에 관한 정보(법무부), 가족관계 정보(법무부)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보(보건복지부), 외국인등록사실 정보(법무부), 국내거소사실 정보(법무부), 소득금액증명(국세청: 소득금액 등), 친환경인증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,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(농림축산검역본부), 가축행복농장인증(경기도), 명품수산물인증(경기도), 지역화폐 사용 및 관리(지역화폐 발행사)

「전자정부법」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?

❍ 상반기 지급검증 ☐ 제공 요구합니다/예 ☐ 제공 요구하지 않습니다./아니오(해당 ☐에 ✔ 표시)

❍ 하반기 지급검증 ☐ 제공 요구합니다/예 ☐ 제공 요구하지 않습니다./아니오(해당 ☐에 ✔ 표시)

※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단,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(묶음정보 서비스) 등을 제공 받을 수 없으며, 사업 신청시 관련 서류를 직접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☐ 문자 알림 수신 동의

❍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관련 정보 수신 ☐ 동의 ☐ 동의안함(해당 ☐에 ∨ 표시)

본인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,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등을 통하여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☐ 전체 동의 ☐ 동의안함 (해당 ☐ 에 ✔ 표시)

년 월 일

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

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신청자 유의사항[고지내용]

1.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의 고령화, 인구감소 등 농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농어업·농어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**관내 소상공인 매장을 적극 이용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지급된 **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(최종 유효기한 :'26.6.30.)간만 사용이 가능하**고, **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**합니다.
3. 농어민 기회소득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(법인은 제외한다)에 등록한 청년농어민, 환경농어민, 귀농어민, 일반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4.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기준은 ① 수원시에 연속 1년(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) 이상 거주, ② 수원시 연속 1년(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) 이상 실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, ③농업외 종합소득 3,700만원 미만, ④ 사회적가치 창출활동(청년, 귀농어민 : 자원봉사, 농어업교육이수, 마을공동체활동 등), 환경농어민(친환경, 동물복지축산농장, 가축행복농장, 명품수산물 인증서) ⑤만 19세 이상(후계농, 생계를 책임지는 자는 예외) 등의 **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하고**, 아래 **지급제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** 심사(농어민 기회소득 심의위원회)를 거쳐 지급이 가능합니다.

> **제외대상자** ①사업체(법인 등) 운영을 위해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(고용근로)하는 임직원 ②농수산물 생산이 아닌 출하·가공·수출·유통·판매 등의 농어업 활동만 하는 자 ③의무군복무자·초중고생·장기입원자 등 영농(어)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자 ④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⑤**농촌기본소득시범사업 지역인 연천군 청산면 대상자는 농어민기회소득 신청 불가(농촌기본소득시범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함)**

5. **부당하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** 이미 지급된 금액의 **환수**되고, 3 ~ 5년간 **사업신청 등이 제한**되며, **형사처벌 대상**도 될 수 있습니다.
6. 사망, 전출, 영농(어)포기, 군입대, 병원입원 등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에 알려(신고)야 하고, 이미 오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은 반환하여야 합니다.
7. 영농영어활동 등에 대하여 **행정기관**(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 포함) **등이 확인**할 수 있고,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.
8.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는 **지급문자로 대신하여 통보**합니다.(지급문자 또는 지급제외자 통보가 없는 경우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)
9.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해당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(장안 ☎ 5191-5372 / 권선 ☎ 5191-6375 / 팔달 ☎ 5191-7072 / 영통 ☎ 5191-8881)
10. **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각종 대상자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**하시기 바랍니다.
    - 수령한 농어민 기회소득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되오니,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신청인 본인은 위의 유의사항(고지내용)**을 확인하고 사업을 신청합니다.**

년 월 일

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

서식2-1 **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신청 위임장**

2025년도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			
위임하는 사람	성명		생년월일
	주소		전화번호
위임받는 사람	성명	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
	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		전화번호
	주소		
내용			

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.

년 월 일

위임하는 사람 (서명 또는 인)

수원시장 귀하

유의사항

1.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 등)을 제시해야 합니다.
2.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 할 경우에는 형법 제 231조의 제 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 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